

평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5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(업무위탁)에 의거 평창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해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 : 평창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위치 : 평창읍 평창중앙로 67(문화복지센터 2층)
- 규모 : 3개소(사무실1, 상담실1, 언어발달교실1)
 - ※ 면적135m²(사무실57, 상담실39, 언어발달교실39)
- 종사자 : 9명(센터장1 팀장1 팀원4 통번역지원사보1 이중언어코치1 방문교육지도사1)
- 사업비('19년 기준) : 546,157천원(국비248,906 도비46,271 군비250,980)

3.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/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
- 위탁내용 : 평창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·관리전반

○ 추진일정

-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2019. 10. 28. ~ 11. 10. (14일)
- 선정위원회 구성 : 2019. 11. 11. ~ 11. 20. (10일)
- 위탁 대상기관 심의·선정 : 2019. 11. 21.~ 11. 30. (10일)
-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공증 : 2019. 12 2 ~ 12 11. (10일)
- 위탁업무 수행 : 2020. 1. 1. ~ 2022 12 31. (3년간)

4.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의 위탁운영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및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
-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

5. 관련자료

- 관계법령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제6조(업무위탁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 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 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